

수원지방법원 2024. 4. 26 선고 2023나62830 판결 [건물명도등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4. 4. 26 선고 2023나62830 판결

수원지방법원 2023. 2. 9 선고 2022가단6054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

피고, 항소인 B

변론종결 2024. 4. 5.

판결선고 2024. 4. 26.

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. 2. 9. 선고 2022가단6054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 1,950,000원 및 2022. 11. 16.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이효진, 판사 김범준, 판사 박수미

별지